

FOCUS

기후변화 대응 국가방재대책 추진현황(강풍분야)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본지 제47호(11년 9, 10월) 기획특집으로 「기후변화 대응 국가방재대책」을 게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 및 재해양상」, 「국가 방재 개선대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10.9.1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광역적 대규모 정전사태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 지자체나 한전 등에서 신속하게 대응체제를 가동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차관회의)를 개최 하고, 중앙합동점검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후변화 선제대응 차원에서 국토체질 강화를 위해 현행 방재기준을 재설정, 방재시설 용량확대 및 재난대응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예방 근본대책을 마련하였다. (7개 분야 58건 추진과제)

이중 태풍 '곤파스' 이후에 추진된 「강풍대책 분야」9개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I. 재난종합개선대책(강풍분야)

1. 옥외광고물 분야

현 실태 및 문제점

- 태풍 곤파스 내습에 따른 강풍으로 옥외광고물 탈락,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 노출(최대순간풍속 인천 28.6m/s, 성남 16.7m/s)

- 성남 야탑동 알파문구사(0.8*3.8m), 인천 남동구 박철헤어스튜디오(0.8*3.5m)

* 알파문구사 돌출간판 이탈로 사망사고 발생 (1명, 9.2, 06:10)

- 옥외광고물 중 5제곱미터 이하 가로형간판은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어 안전사각지대 우려

*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간판(1,341개)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 추정

【 전국 옥외광고물 현황 】

(09.12월 기준)

(단위 : 개)

총계	적법 (47%)				불법 (53%)
	계	허가	신고	신고배제	
5,264,290	2,445,842 (100%)	533,057 (21.80%)	371,986 (15.20%)	1,540,799 (63%)	2,818,448

- 현재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기준은 사용자재, 접합부위, 전기설비의 적정성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도검사 기준은 미흡한 실정임
-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등으로 되어있어, 안전도검사 시 구조안전 분야에 대한 검사가 미흡한 실정임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설계도서의 구조안전성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절차) 미흡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제39조제1항관련)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 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개 선 대 책

- 5제곱미터 이하 가로형간판에 대해서도 시장 등에게 신고 후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종전에 설치된 5제곱미터 이하 가로형간판 및 불법 광고물 대상 취약시기 안전점검 실시 강화 및 자진정비 유도
-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강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
 - 검사 대상 광고물 확대, 검사 실시 자격기준

FOCUS

보완 등

- 옥외광고물 단계별 안전점검 강화
 - (허가·신고 접수단계) 설계도서 등에 의한 서면 안전점검
 - (설치단계) 하중·풍압력 등을 고려한 기초부 분, 볼트조임·접합상태 등 구성자재, 용접상태 등 접합부위 안전기준 강화
 - (재난예방단계) 안전도검사 위탁 관리·감독 강화 및 수탁자 전문성 강화
 - (재난대비단계) 긴급 안전점검 실시
- 풍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판류형 간판' 대신 상대적으로 풍압력을 적게 받고 도시미관에도 긍정적인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 권장·홍보

개선대책 추진현황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강화(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완료) : '11.10.10
 - 5제곱미터 이하 가로형간판 신고배제 규정

2. 건축물 비구조 부재(아파트 발코니, 외벽 등) 분야

현 실태 및 문제점

- 태풍 곤파스 내습에 따른 강풍으로 아파트 발코니 창문, 건축물 외벽타일, 기와 등 비구조 부재가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 인천 남동구 신세계아파트(80. 5월 입주, 사시 3.7*2.5, 유리 5mm) 등(인천 최대순간풍속 28.6m/s)
 - * 아파트 유리창 두께 : 5~22mm('05년 이후), 5~16mm('00년 이후), 5mm('00년 이전)
- 서울 금천구 시티렉스, 성남청사, 인천 용진 영흥화력발전소(최대순간풍속 서울 종로 21.65m/s, 성남 16.7m/s)

- 건축구조기준에 외장재에 대한 풍하중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베란다 샷시(유리창), 건물외벽(타일, 기와 등) 등 비구조 부재에 대한 구조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기존시설 설계풍속 기준	지역별 기본풍속 설정운영(5단계) 25m/s, 30, 35, 40, 45
--------------	--

개선 대책

- 건축물 설계 시 바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구조 부재가 파손·비산되지 않도록 내력구조물과의 일체화방안, 설치기준 등 관련기준 마련(「건축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구조설계기준)

개선대책 추진현황

- 건축물 비구조 부재(아파트 발코니, 외벽 등)의 설치기준 마련(국토해양부)
 - 건축구조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13년까지 기준마련예정)

3. 공작물(종교침탑) 분야

현 실태 및 문제점

- 태풍 곤파스 내습에 따른 강풍으로 종교시설(침탑, 공작물)이 전도, 안전사고 위험 노출(최대순간풍속 인천 28.6m/s, 춘천 19.0m/s)
 - 인천 남구 풍성교회, 춘천 석사동 새순교회(미신고 공작물)
- 공작물 설치에 대한 관련규정 미흡
 - 건축법 시행령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적용하는 구조내력 등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 공작물 축조신고서에 맞도록 설치되었는지 확

인절차 기준 없음

기존시설 설계풍속 기준	지역별 기본풍속 설정운영(5단계) 25m/s, 30, 35, 40, 45
--------------	--

개 선 대 책

-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되는 공작물이 축조 신고서 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마련(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신고하는 공작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축조 신고서에 맞는 안전성을 검사하는 절차 신설
 - 또한, 미신고 불법 공작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필요

개선대책 추진현황

- 공작물(중고 침탑)의 안전 확인절차 기준 마련 및 불법공작물 일제정비(국토해양부)
 - 불법 공작물 일제 조사·정비 : '11.1~11.12월
 - 「건축법」시행규칙 규제심사 준비중('12년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 예정)

4. 교통시설물(신호등) 분야

현 실태 및 문제점

- 강풍으로 교통신호등이 파손, 주행차량과 충돌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음(서산 최대순간풍속 41.4m/s)
 - 충남 서산 동문동 코아루아파트, 대림북부로 신호등 파손
- 교통신호등에 대한 내풍기준 미흡
 - 신호등은 도로교통법(교통신호기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신호등 지주와 수평지지대 연결지점에서 많은 피해 발생(응력집중)

기 준	내륙	해안	올릉도
기존시설 설계풍속 기준	35m/s	40~45m/s	50m/s

개 선 대 책

신호등 지주 및 가로부착대가 풍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풍속설계기준 상향(교통신호기설치 및 관리매뉴얼 제5장 신호기지주설치방법)

풍압을 받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표지 부착기준 마련 및 부착물 일제정비 실시

개선대책 추진현황

- 교통시설물(신호등)의 풍속설계 기준 상향 및 지주 부착물 일제정비(경찰청)
 - 이상기후에 따른 강풍에 대비, 신호기 지주 풍속설계기준을 기존대비 5m/s 상향*,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
 - * 상향내용 : 내륙 35→40m/s, 해안 40→45m/s 등
-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한「국민 집중 신고기간」운영('12.5), 접수된 시설물 지자체, 도교통단과 합동으로 일제정비 중

5. 철도(지하철) 통신·전력케이블 분야

현 실태 및 문제점

- 태풍 곤파스 내습에 따른 강풍으로 전력공급중단 및 통신케이블 이상으로 철도 및 지하철(1,2,4호선) 운행중단(최대순간풍속 서울 종로 21.6m/s)
 - 통신케이블이 늘어져 전차선과 접촉되는 사고 발생(2호선 당산철교)
 - 바람에 날린 이물질이 전력케이블과 접촉, 단

FOCUS

전 사고발생(1,4호선 등)

- 지하철 통신케이블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미흡
 - 전자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통신케이블을 설치·관리(점검)을 하고 있으나, 금번 강풍에 고정크래프 이상으로 통신케이블이 끊어져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고정크래프 등 관련시설에 대한 설치(안전)기준 강화 검토 필요
 - * 관계법령 : 전기통신기본법(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

기존시설 설계풍속 기준	40 m/s
--------------	--------

개선대책

- 철도(지하철) 통신(전력)케이블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보수 내부 규정 마련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게 통신선로의 풍해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내부 규정 마련하도록 권고
 - 철도 등 공공기관(민간 자가통신설비는 제외) 자가통신설비의 풍해대책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개선 검토
 - *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연구소)
 - 자가통신설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 자가통신사업자 업무지침(중관소)

개선대책 추진현황

- 철도(지하철) 통신·전력케이블의 시설관리·유지보수 내부규정 마련(방통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완료) : '11.8.19

6. 농업시설 분야

현 실태 및 문제점

- 과수원 및 기존 농업시설에 대한 구조보강, 피해 예방대책 미흡
 - 강풍으로 인한 과수낙과 및 파업 피해 발생(과수원 방풍망 미설치 농가 및 과실 성숙기인 8월 하순 이후 피해 증가)
 - 순간최대풍속 14m/s 이상시 과수 낙과율 급속히 증가
 - 기존 농업시설(내재해 규격시설 이전의 시설)의 안전강도 취약
 - 기존 농업시설의 안전풍속 : 10.5~23.8m/s(단동, 전체 비닐하우스의 80% 차지)
 - * 기존 단동하우스는 재해복구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기설치 시설을 표준규격화한 것임

〈과실 낙과(당진, '10년)〉



〈하우스 골조 붕괴(서산, '10년)〉



- 지역별 설계풍속 이상의 풍하중(태풍) 내습
 - 내재해 규격시설도 지역 설계기준 이상의 풍하중이 가해져 피해 발생

- 서산지역의 설계기준 풍속(30년빈도) : 30~35m/s미만
- * 태풍 '곶파스'의 순간 최대 풍속 : 41.4m/s(충남 서산)

- '10.9.1~2 태풍 '곶파스' 피해 현황
 - 비닐 하우스 : 642ha, 56,320백만원
 - 인삼재배시설 : 1,038ha, 21,251백만원
 - 과수재배시설 등 : 121ha, 1,306백만원

- 풍하중에 대한 적극적 피해 예방대책 미흡
 - 과수낙과피해경감 및 농업시설 보호를 위한 방풍망 설치기준 미흡

개 선 대 책

- 과수원·농업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개선 및 구조보강
 - 과수낙과 피해경감 및 시설단지 보호를 위한 방풍망 설치기준 개정
 - 과수원에서의 방풍네트별 풍속저감 효과 및 안전풍속 등
 - * 과수원 방풍망(영주·풍기, 경주·포항) : 4mm 청색(20% 풍속저감)
 - 시설재배단지에서의 방풍망 안전유효영역 제시 등
- 기존 비닐하우스의 논삽입방식 기초 구조보강
 - 철근(지심깊이 90cm 이상) 등을 이용한 인발력 보강 기술지도

〈과수원 보호〉



〈비닐하우스 보호〉



- 내재해 규격시설 설치 홍보·지도
 - 지역별 설계강도 이상의 내재해 규격시설 설치관리 및 지도·감독
-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설계기준 이상의 풍하중 예보시 피복재 찢기 지도
 - 태풍 대응요령, 풍수해 보험 등 재난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방안 마련

개선대책 추진현황

- 원예시설 내재해형 보급 확대(농림수산식품부)
 -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 고추비가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내재해형 시설 보급 추진
 - '12년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 온실 증개축 58ha, 고추비가림시설 신축 150ha 추진
 - * '11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 증개축 118ha 지원

7.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분야

현 실태 및 문제점

- 태풍 곶파스 내습에 따른 강풍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파손, 치어 등 종묘생산시설 피해발생(서산 최대순간풍속 41.4m/s)
- 충남 서산 읍내동, 대산읍, 오남동 해수양식어업시설 파손

포커스

FOCUS

-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대한 설치기준 없음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4)에 규정된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월동시설에 국한되어 있음(시설의 풍하중 등 구조내력 등에 관한 사항은 없음)

기존시설 설계풍속 기준	시설기준 없음
--------------	---------

개선대책

-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대한 내재해 시설기준 마련
 - 풍하중 등 구조내력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의 풍하중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 마련(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4))

개선대책 추진현황

- 육상 해수양식시설의 내재해 시설기준 마련(농림수산식품부)
 - 육상 해수양식시설 내재해 시설기준 마련(완료) : '11.12.30
 - 어업인 내재해 시설기준 보급(완료) : '12.2.8

8. 정전사태 예방분야

가. 전신주 도괴·절손

현 실태 및 문제점

- 수목도괴 등에 의한 전주절손(부러짐), 전선단선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 및 전력공급 중단에 따른 2차피해 발생

- 정전발생 현황(태풍「곤파스」)

발생원인	수목도괴	이물접촉	기타	합계
발생건수	632	110	168	910

* 기타 : 바인드이탈, 전력선 단선, 부대 전력설비파손 등

- 대부분 수목도괴 또는 간판 등 비산물에 의해 피해발생(81%)
- 자연재해 미경험지역(충남, 경기 등) 일부 전주도괴·절손피해 발생
 - 해안지역 피해현황 : 74기(경사 6기, 도괴 61기, 절손 7기)
 - * 일반용전주의 경우 “배전설비 설계·시공 기준” 제정 이전 설치된 전주임


개선대책



- 재해·재난대비 전력설비 보강 지속 추진
 - KEPCO 설비보강 예산투입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8개시·도 점검 사업비			비고
		계	'11년 확보액	'12년 이후	
계	2,487	-	-	-	
KEPCO 설비보강	2,487	-	-	-	

- 주요 설비보강 내역
 - 전주강도 강화 및 표준경간 축소 ⇨ 지선설치, 전주교체 등
 - 연약지반 개소 지지물 기초보강 ⇨ 지선·근가 보강, 전주교체
 - 전주 연속도괴 피해방지 시설 ⇨ 지선보강, 고강도 전주설치
- 태풍대비 전력설비 시설기준 준수토록 설계시스템 보완
- 해안지역 근접 배전선로 장주형태 변경 : 핀 ⇒ 내장주

- 방 법 : 배전설비 설계 · 시공기준 개정 추진 ·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시 NDIS 설계시스템 태풍대비지역 메시지 자동파업으로 설계자 인지 · 적용 • 메시지 내용 : “풍속 I (또는II) 지역입니다. 태풍대비 배전설비 운영기준 적용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	--

구 분	현 행	현 행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태풍대비 (I, II) 지역 - 기준 : 수평각도 5° 미만개소 판장주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태풍대비 (I, II) 지역 - 신설 : 수 개소 내장시공 기설 : 연차별 점진적 시공
장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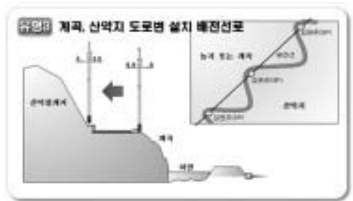
- 효 과 : 강풍에 의한 전선단선, 바인드이탈 정전 예방
- 지형특성 등을 고려한 전력설비 건설로 설비피해 최소화
 - 지선설치, 하천, 수목 등 현장지형을 고려한 경과지 선정 및 건설
 - 시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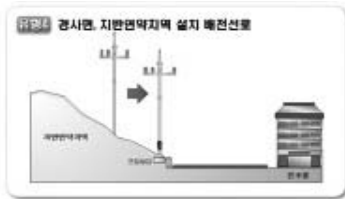
• 지선, 법면 끝부분 우선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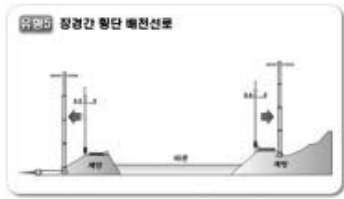
• 하천 반대편 우선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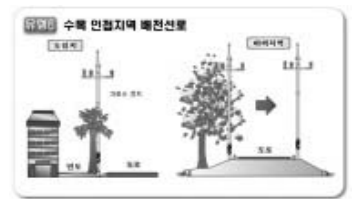
• 강관주 활용 직선선로 구성



• 법면 끝부분, 근입보강



• 연락지반 지양, 제방 끝부분



• 수목반대편 도로측 시설

FOCUS

개선대책 추진현황

- 전력설비 보강 및 해안지역 근접선로 장주기준 개정(지식경제부)
 - 재해·재난대비 설비보강 추진 : '11~' 15년
 - 투자예산 확보 : '11~' 15년 연평균 100억 예산투자
 - 확보방안 : 사업소별 연간 유지보수 예산 편성시 반영
 - * 특히 곤파스 피해가 집중된 중부권 사업소 위주 집중 편성·투입

- 해안지역 근접선로 장주기준 개정 추진 : '10.12월

나. 수목도괴 전주유실 등 피해우려

현 실태 및 문제점

- 강풍 등에 따른 수목도괴로 정전피해 집중발생 (69%)
 - 마을 진입로, 도로변 인도 외측의 수목도괴로 전력선 접촉발생
 - 대부분 사유지 또는 지자체 관리 수목의 도괴로 발생

【수목 소유 유형별 정전현황(태풍 「곤파스」)】

구분	사유지	지자체	국공유지	계
정전건수	232	310	90	632
점유율(%)	36.7	45.2	14.2	100

- 도괴수목은 소나무, 아카시아가 50%이상을 점유

【경기·충남지역 수종별 현황】

구분	소나무	아카시아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미루나무	참나무	기타	합계
수량(본)	4,375	3,581	305	497	933	1,979	4,159	15,829
점유율(%)	28	23	2	3	6	13	25	100



• 지선, 법면 끝부분 우선검토



• 하천 반대편 우선설치



• 강관주 활용 직선선로 구성

- 사유지 및 지자체 소유 수목전지 곤란
 - 마을 진입로 주변 야산, 언덕 등 사유지내 수목제거 곤란
 - 소유주와 전지 합의불가로 선 수목전지시 손해배상 요구 빈발

- 전력선과 측방이격거리 확보시 수목전지 허가에 부정적
- 전력설비에서 1~2m 이상 떨어진 수목은 사실상 전지협의 곤란
- 전력선 접촉방지 위주의 약전지로 수목도괴

- 시 설비피해 발생
- 사유지내 수목 등의 재해예방 관련 수목관리 규정 부재
 - 도괴위험 수목 등에 대한 전지나 지지목 설치 등 관리규정 부재
- 재해시 전력설비 도괴수목 제거에 따른 복구지연 발생
 - KEPCO 단독 수목제거로 전력설비 복구에 장시간 소요

개 선 대 책

- 사유지 수목도괴 우려개소 소유자 안내 등 전지방안 강구
 - 재해시 수목도괴에 의한 피해사례 사진제작
 - 수목 소유자에게 수목도괴 가능성 및 전지 필요성 안내 · 설득
 - 수목전지 허가 시 KEPCO주관 즉각적인 수목 전지 시행
- 고가 소나무 등 수목전지 곤란지역 가공케이블 설치
 - 대 상 : 도로 양측배열로 대체경과지 선정곤란 개소
 - 방 법 : 현재 시범사용중인 「스페이스 케이블」 배전방식의 기자재 개발 및 적용(장기)
- 태풍 등 재해예방 수목관리 관련 규정 개정
 - 전력선 근접 수목의 강전지 시행
 - 가로수 : 1~2년 동안 접촉되지 않도록 전지(수종별 2~4m) 승인
 - 비가로수 : 강전지 또는 벌목 승인(보호수 제외)
- 가로수 식재, 수종개선 시 가급적 수고가 낮은 품종 식재
 - 단풍나무, 왕벚나무, 목백합, 베롱나무 등
- 태풍 등 재해예방 차원의 수목관리 관련 규정 개정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개정

개선대책 추진현황

- 재해예방차원의 수목관리 관련 규정 개정(산림청)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완료) : '11.12.6
 -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 마련(완료) : '11.7.28

II. 제도 개선사항

강풍대책 분야

- 모든 옥외광고물을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토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 검토 및 안전점검 강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
- 각종 내풍시설물의 내재해 시설기준 강화(소관부처)
 - * 시설물 : 옥외광고물, 건물외장재, 종교시설(침탑 등), 가로시설물 등
- 지하철 통신(전력)케이블에 대한 시설관리 · 유지보수 규정 마련(방송통신위원회)
- 농업시설단지,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에 대한 내재해 시설기준 마련(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해안지역 근접선로 장주기준 개정 추진(지식경제부)
- 재해예방차원의 수목관리 관련규정 정비(산림청, 지식경제부)

포커스

FOCUS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추진과제

• 개선대책 총괄

(단위 : 건)

구분	계	방재기준	시설확충	시스템개선	수재민지원	제도개선
계	58	32	7	15	4	32
수방대책	21	12	7	2		11
강풍대책	9	9				9
폭설대책	1			1		
폭염대책	1			1		
가뭄대책	1			1		
재난관리시스템	17	7		10		5
서민지원대책	8	4			4	7

* 제도개선과제는 유형별 과제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임

• 강풍대책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추진기관	
		주관기관	관련기관
강풍대책 (9)	①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강화	행정안전부	
	② 건축물 비구조 부재(아파트 발코니, 외벽 등)의 설치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③ 공작물(종교 첨탑)의 안전 확인절차 기준 마련 및 불법공작물 일제 정비	국토해양부	
	④ 교통시설물(신호등)의 풍속설계기준 상향 및 지주 부착물 일제 정비	경찰청	
	⑤ 철도(지하철) 통신·전력케이블의 시설관리·유지 보수 내부규정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⑥ 농업시설의 방풍망 내재해시설기준 마련 등	농식품부	
	⑦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의 내재해 시설기준 마련 등	농식품부	
	⑧ 정전사태 예방분야		
	⑧-1 전력설비 보강 및 해안지역 근접선로 장주기준 개정	지식경제부	한전
⑧-2 재해예방차원의 수목관리 관련규정 개정	산림청	지식경제부	